<u> 부도</u>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이동근 010-9697-0525)

제목 :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제출

날짜 : 2022년 12월 7일(수) 총 2매

[보도자료]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최근 신약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민들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약제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회 치료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약제비 지출 증가도 심각하여 근거자료가 미비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반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7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 견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21207-01

시행일자 2022. 12. 07.

발 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담당: 이동근 사무국장)

수 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 목 서정숙의원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월 1일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자료 참고)
 - 성명: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대표: 신형근)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전화번호: 02) 523 9752
- 붙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593) 에 대한 의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신형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1859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최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신약들의 고가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서 약제비 지출 증가를 부추기는 개정 안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2. 이유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목적이 제약산업육성 약가 우대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개정안임을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개정되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위임한 관리·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최근 신약의 고가화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따라 향후 만성적인 적자재

정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약가우대는 약제비지출 및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까지 악화시킬 것입니다.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약제비 지출이 연평균 5%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3%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1인당 3억원이상 드는 약제는 2016년 377억 원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 1,46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도 1회 치료에 20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킴리아 같은 약제가 급여등재되었고 앞으로도 수억원이 넘는 약제들이 가격 및 급여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뇌영양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관절염보조제인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상품명: 이모튼), 간질환 보조제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상품명: 고덱스) 등 효능을 입증할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음에도 제약산업의 반발로급여퇴출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혁신형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오츠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와 같은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면, 향후 약제비 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며, 뒤늦게 철회하려 해도 제약산업의 반발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육성은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우회 지원보다 국회를 포함한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검토를통해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